

---

# 2020년 세종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공모 안내문

---

2020. 1. 17.



# 2020년 세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공모 안내

## 1. 사업내용

### □ 사업목적

- 아동·청소년 및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소양을 기르고 또래·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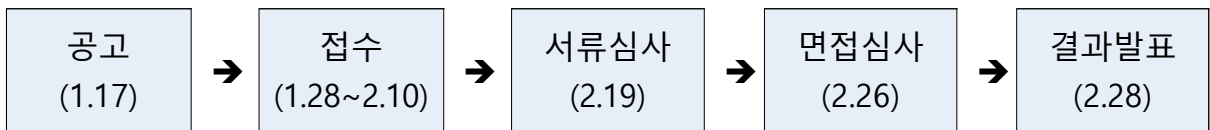
###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0년 세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사업기간 : '20. 1 ~ 12월 / 교육기간 : '20. 4 ~ 11월
- 사업내용 : 문화예술단체(기관) 지원을 통한 아동·청소년 및 가족 대상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시문화재단
- 협력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2. 공모내용

### □ 공모개요

- 지원대상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단체(기관)
- 지원금액 : 총 85,000천원 ※ 단체(기관) 당 15,000천원 이내
- 진행일정



※ 상기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주요 변경내용

구분	2019년	2020년
지원금	단체당 15,000~30,000천원	단체당 15,000천원 이내
공모유형	기획공모, 일반공모	일반공모
운영횟수	30회 이상	20회 이상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접수

## □ 지원방향 및 내용

### ○ 지원방향

- 문화적 감수성과 예술적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아동·청소년·가족 등 참여자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프로그램
- 다분야의 예술장르가 결합된 융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 지원내용

-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연간 운영비  
(강사 및 기획자 인건비, 교육 운영비, 운영물품, 홍보물 제작비 등)

## □ 운영단체 추진내용

구분	내용
운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기간 : 2020. 4 ~ 11월</li> <li>○ 운영횟수 : 기간 내 주 1회, <b>20회 이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20회를 탄력적으로 편성하여 운영 가능 예) 10회×2기수, 20회×1기수 등</li> </ul> </li> <li>○ 운영시간 : <b>회차별 3시간 이내, 주말 운영</b></li> <li>○ 운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말 프로그램 : 전체 회차의 20% 이내에서 주중, 공휴일 운영 가능</li> <li>- 방학 프로그램 : 방학 중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주중 운영 가능</li> </ul> </li> </ul>
교육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시 거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가족(기수별 20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등) 10% 이상 포함 필수</li> <li>※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신청 불가</li> </ul> </li> </ul>
교육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교육사 및 현장 예술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악, 연극, 디자인, 사진, 무용, 음악, 미술,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등 10개 분야 프로그램 운영시 해당 문화예술교육사 참여 권장</li> </ul> </li> </ul>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목표에 따라 강의, 체험, 관람, 캠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li> <li>- 회차별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성</li> </ul>
운영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시 관내 문화시설 및 공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집, 학원 등 민간시설이나 학교시설(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불가</li> </ul> </li> </ul>
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5월 4주) 운영 참여</li> <li>○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비롯한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참여</li> <li>○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예산 집행</li> </ul>

## □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기관)

우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li> <li>○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li> </ul>
------	--

## ○ 신청 유의사항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1건 이내로 선정
- 운영 목적이 문화예술활동이 아닌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이거나 이들 기관의 소속으로 운영되는 단체(기관)는 신청불가
- '19년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 받고 '20년 서류심사 전일까지 정산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기관)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 공모 및 접수

- 공고기간 : '20. 1. 17(금) ~ 2. 10(월) / 25일간
- **접수기간 : '20. 1. 28(화) ~ 2. 10(월) 18:00 / 14일간**
  - e나라도움 시스템 자동 접수 마감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신청 바람
- 신청방법 : 세종시문화재단 홈페이지 관련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전자메일,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문의전화 : 문화예술교육팀 ☎ 044-850-0523
- 제출서류

구분	연번	제출서류	비고
필수	-	지원신청서	e나라도움 시스템 작성
	1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e나라도움 시스템에 파일로 첨부 <b>*지정양식 사용</b>
	2	신청 단체(기관)정보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각 1부	
	3	참여인력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 이력증빙서류 각 1부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5	교육운영 협력 및 참여 확인서 1부		
선택	6	문화예술교육 운영실적 자료 1부	

###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 e나라도움 시스템 신청 시,
  - 지원신청서 외 필수 제출서류(1~5번) 양식은 세종시문화재단 홈페이지([www.sjcf.or.kr](http://www.sjcf.or.kr))에서 다운로드
  - 파일 첨부 시 파일명 정확히 기재  
(예시) 1.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3. 참여인력 이력서
  -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제출이 완료되며, 공모신청서 진행상태가 '제출'로 변경되었는지 필히 확인바람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모신청 지정양식 외 임의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3. 심사 및 선정

### □ 심사절차

서류심사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심사일시</b> : '20. 2. 19(수) / 결과공고 : 2. 21(금)</li> <li>○ <b>심사방법</b> : 사업계획서 평가</li> <li>○ <b>선정규모</b> : 최종 선정 예상 단체의 2배수 내외 선정</li> </ul>
--------------	---



인터뷰심사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심사일시</b> : '20. 2. 26(수) 10:00 / 결과공고 : 2. 28(금)</li> <li>○ <b>심사방법</b> : 사업계획 PT, 단체 기획자·주강사 인터뷰</li> <li>○ <b>선정규모</b> :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최종 단체 선정</li> </ul>
---------------	--

※ 상기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

### □ 심사기준

심사 영역	심사 지표	배점
사업 이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교육 및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취지 이해도</li> <li>○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의 적절성</li> </ul>	30
사업 계획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 문화환경 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의 차별성</li> <li>○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구체성</li> <li>○ 참여자 모집·관리 계획의 적절성</li> <li>○ 예산규모 및 편성의 합리성</li> </ul>	40
사업 운영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교육 운영 및 교육인력의 전문성</li> <li>○ 교육공간의 이용편의성 및 안정성</li> <li>○ 자체 교육역량강화 활동계획의 적절성</li> </ul>	30

※ 서류 및 인터뷰 심사 동일

□ 기타사항

○ 선정단체 사업 포기 관련

- 선정단체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고득점 차순위 단체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단, 사업 포기일이 선정발표 1개월 이내일 경우 해당)

○ 사업비 정산 관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관리 및 비용집행
- 사업비 정산은 운영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완료하여 제출해야 함

※ 운영기간 종료 : 11월 / 정산서류 및 결과보고 제출 : 12월

#### 4. 주요일정

□ 사업설명회

- 일시/장소 : '20. 1. 29(수) 15:00 / 박연문화관 2층 회의실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7(어진동 593)
- 주요내용 : 공모 세부내용 및 신청방법 안내, 질의응답

□ 연간 추진일정

단계	기간	내용
사업 준비	'20. 1~3월	지원사업 공고(1.17~2.10) 및 설명회(1.29)
		공모 심사 및 운영단체 선정(2.28)
		선정단체 대상 사업 컨설팅 및 역량강화 연수 진행(3월)
사업 운영	'20. 4~11월	교부신청서 접수 및 보조금 교부(1차)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행사 개최(5.23)
		전문가 컨설팅 및 현장 모니터링(상·하반기 각 1회)
		보조금 2차 교부 및 정산교육
사업 평가	'20. 12월	운영단체 워크숍(성과공유회)
		사업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운영단체→재단)
		사업 결과자료집 제작

**<붙임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산편성 기준**

목	세	세세목	내 용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기획자 인건비	○ 교육프로그램 회차당 기본 50,000원, 2시간 초과 이후 시간당 20,000원 지급 - 기획자 인건비는 효율적인 사업관리(회계, 기록 등)를 하는 전체 하에 지원 가능 - 동일인이 기획자와 강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하나의 인건비만 지급 가능 (중복 지급 불가) ※ 기획자 인건비는 각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강사비	○ 강사 : 시간당 43,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22,000원 - 강사비는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캠프,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1일 최대 5시간까지 책정 가능 -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 지급내역서(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교육/강연 일자 및 시간, 금액 등 포함)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																																																																																																								
		강사 교통비	○ 강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자·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계산 - 강사 거주지와 교육장소 간의 왕복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 단,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30-100km</th> <th colspan="2">101-200km</th> <th colspan="2">201-300km</th> <th colspan="2">301-400km</th> </tr> <tr>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30-40</td> <td>7,000</td> <td>101-120</td> <td>12,000</td> <td>201-220</td> <td>24,000</td> <td>301-320</td> <td>44,000</td> </tr> <tr> <td>41-60</td> <td>8,000</td> <td>121-140</td> <td>14,000</td> <td>221-240</td> <td>28,000</td> <td>321-340</td> <td>48,000</td> </tr> <tr> <td>61-80</td> <td>9,000</td> <td>141-160</td> <td>16,000</td> <td>241-260</td> <td>32,000</td> <td>341-360</td> <td>52,000</td> </tr> <tr> <td>81-100</td> <td>10,000</td> <td>161-180</td> <td>18,000</td> <td>261-280</td> <td>36,000</td> <td>361-380</td> <td>56,000</td> </tr> <tr> <td>-</td> <td>-</td> <td>181-200</td> <td>20,000</td> <td>281-300</td> <td>40,000</td> <td>381-400</td> <td>60,000</td> </tr> <tr> <th colspan="2">401-500km</th> <th colspan="2">501-600km</th> <th colspan="2">601-700km</th> <th colspan="2">701km 이상</th> </tr> <tr>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h>왕복거리</th> <th>금액</th> </tr> <tr> <td>401-420</td> <td>64,000</td> <td>501-520</td> <td>84,000</td> <td>601-620</td> <td>104,000</td> <td>701-</td> <td>124,000</td> </tr> <tr> <td>421-440</td> <td>68,000</td> <td>521-540</td> <td>88,000</td> <td>621-640</td> <td>108,000</td> <td colspan="2"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441-460</td> <td>72,000</td> <td>541-560</td> <td>92,000</td> <td>641-660</td> <td>112,000</td> </tr> <tr> <td>461-480</td> <td>76,000</td> <td>561-580</td> <td>96,000</td> <td>661-680</td> <td>116,000</td> </tr> <tr> <td>481-500</td> <td>80,000</td> <td>581-600</td> <td>100,000</td> <td>681-700</td> <td>120,000</td> </tr> </tbody> </table> <p>※ 30km이상이더라도 같은 시·군·구 내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 서울-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및 제주공항-교육장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보조금 지급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음          ☞ <b>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할 것</b></p>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7,000	101-120	12,000	201-220	24,000	301-320	44,000	41-60	8,000	121-140	14,000	221-240	28,000	321-340	48,000	61-80	9,000	141-160	16,000	241-260	32,000	341-360	52,000	81-100	10,000	161-180	18,000	261-280	36,000	361-380	56,000	-	-	181-200	20,000	281-300	40,000	381-400	60,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4,000	501-520	84,000	601-620	104,000	701-	124,000	421-440	68,000	521-540	88,000	621-640	108,000	/		441-460	72,000	541-560	92,000	641-660	112,000	461-480	76,000	561-580	96,000	661-680	116,000	481-500	80,000	581-600	100,000
30-100km		101-200km		201-300km		301-400km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30-40	7,000	101-120	12,000	201-220	24,000	301-320	44,000																																																																																																				
41-60	8,000	121-140	14,000	221-240	28,000	321-340	48,000																																																																																																				
61-80	9,000	141-160	16,000	241-260	32,000	341-360	52,000																																																																																																				
81-100	10,000	161-180	18,000	261-280	36,000	361-380	56,000																																																																																																				
-	-	181-200	20,000	281-300	40,000	381-400	60,000																																																																																																				
401-500km		501-600km		601-700km		701km 이상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왕복거리	금액																																																																																																				
401-420	64,000	501-520	84,000	601-620	104,000	701-	124,000																																																																																																				
421-440	68,000	521-540	88,000	621-640	108,000	/																																																																																																					
441-460	72,000	541-560	92,000	641-660	112,000																																																																																																						
461-480	76,000	561-580	96,000	661-680	116,000																																																																																																						
481-500	80,000	581-600	100,000	681-700	120,000																																																																																																						
		초빙 강사료 (연수 등)	○ 특강은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특강 활용 가능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등급</th> <th>지급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강사료</td> <td>1등급*</td> <td>250,000/시간</td> </tr> <tr> <td>2등급*</td> <td>150,000/시간</td> </tr> <tr> <td>3등급*</td> <td>100,000/시간</td> </tr> </tbody> </table> <p>※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p>	구 분	등급			지급금액	강사료	1등급*	25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구 분	등급	지급금액																																																																																																									
강사료	1등급*	25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목	세	세세목	내 용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행사 진행자	구 분	등급	지급금액	
		행사료	1등급*	20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전문가 활용비 (학술 행사)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학술 행사비	1등급*	발표자	500,000(*300,000)/1일		· 3시간 이내일 경우 (*) 금액 적용 · 국외 : 실소요액	
	2등급*	사회자	300,000(*300,000)/1일			
		토론자	200,000(*200,000)/1일			
3등급*	발표자	200,000(*100,000)/1일				
		사회자	150,000(*100,000)/1일			
		토론자	100,000(*100,000)/1일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심사 및 자문료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심사료 및 자문료	심사료 및 자문료	1등급	200,000원	· 2시간 기준 · 2시간 이상: 150% · 5시간 이상: 200% · 국외: 실소요액		
		2등급				
		3등급	100,000원			
○ 자문료 지급 관련 -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시 사례비 지급 가능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원고료	구 분	지급금액				
	원고료(외부인사)	○ 40,000원/장 (A4 1매 800자 기준)				
※ PPT의 경우 슬라이드 3면을 A4 1매로 산정						
번역료 및 감수료	구 분	지급금액				
번역료	번역료	○ 외국어 ⇒ 한글 : 3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 한글 ⇒ 외국어(영,일) : 60,000/A4 1매(800자)				
		○ 외국어 ⇒ 기타외국어 : 60,000/A4 1매(250단어 또는 800자)				
		○ 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 한국어번역시 1장미만 10만원				
감수료	○ 필요시 번역료의 20%반영					
편곡 및 작곡 관련 규정	구 분	등급	지급금액	비 고		
편곡	편곡	1등급	500,000원/곡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2등급	400,000원/곡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3등급	300,000원/곡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		
작곡	*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					
감수료	등급무관	50,000원	·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을 지급함.			
※ 1등급 :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써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 국내 시·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목	세	세세목	내 용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기타 진행비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 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소모품 구입비, 현장주차비 등 ○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교육재료비																														
		안내 홍보물 제작비	○ 팸플렛,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필요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인쇄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조달청 기준 참고																														
		회계 검사 수수료	○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부가세 포함) ○ 회계검사수수료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 교부 시 교부내역서에 회계검사 소요경비(수수료)로 포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기준금액</th> <th>수수료</th> <th>기준 금액</th> <th>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1천만원 미만</td> <td>282,000</td> <td>8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td> <td>632,000</td> </tr> <tr> <td>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td> <td>282,000</td> <td>9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td> <td>674,000</td> </tr> <tr> <td>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td> <td>336,000</td> <td>1억원 이상~2억원 미만</td> <td>848,000</td> </tr> <tr> <td>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td> <td>365,000</td> <td>2억원 이상~3억원 미만</td> <td>894,000</td> </tr> <tr> <td>5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td> <td>505,000</td> <td>3억원 이상~4억원 미만</td> <td>940,000</td> </tr> <tr> <td>6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td> <td>547,000</td> <td>4억원 이상~5억원 미만</td> <td>985,000</td> </tr> <tr> <td>7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td> <td>590,000</td> <td>5억원 이상~6억원 미만</td> <td>1,147,000</td> </tr> </tbody> </table> ※ 기준 금액은 수수료 인상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준금액	수수료	기준 금액	수수료	1천만원 미만	282,000	8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	632,000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282,000	9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674,000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336,000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848,000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365,000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894,000	5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505,000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940,000	6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547,000	4억원 이상~5억원 미만	985,000	7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590,000
기준금액	수수료	기준 금액	수수료																														
1천만원 미만	282,000	8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	632,000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282,000	9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674,000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336,000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848,000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365,000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894,000																														
5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505,000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940,000																														
6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547,000	4억원 이상~5억원 미만	985,000																														
7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	590,000	5억원 이상~6억원 미만	1,147,000																														
공공 요금 및 제세 (02)	공공 요금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발송, 킷서비스, 보험료 등																															
운영비 (210)	임차비 (07)	차량/ 장소/ 기자재	○ 차량 임차 : 실비적용 -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 운영 기관·단체 소유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경비 지출 불가 ○ 장소 임차 : 공공시설 이용 등 최소비용 권장 - 매회차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육장소 임차비 활용을 허용하되, 문화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한하여 임차비를 인정. 1회(3시간 기준) 최대 5만원까지 활용가능(상시 교육활동 장소에 한함) * 문화기반시설 : 문화기반시설 총람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과 생활문화센터 등 공공문화시설 ** 공공시설 :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 기자재 임차 : 구입보다는 대여 권장																														
		외주 업체 용역비 (15)	○ 행사 대행업체 용역, 디자인 용역, 영상물 제작 용역(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 작업 제외), 홍보(프로모션) 대행업체 용역, 구매(제작용역) 등 ☞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견적 시행																														

목	세	세세목	내 용			
여비 (220)	국내 여비 (01)	여비 기준	○ 출장경비 지급 기준			
			구 분	내 역	지급 방법	지급액
			시내출장	여비	정액	· 4시간 미만 : 1만원 · 4시간 이상 : 2만원
			시외출장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 지급 · 부득이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거리 계산에 따름 * [유류비 산출기준] 참조
				숙박비	실비 (1박당)	· 서울특별시 : 70,000원 · 광역시 : 60,000원 · 그 밖의 지역 : 50,000원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
				식비	정액	· 2만원 * 2식 이하 제공 시 1/2 삭감 * 3식 제공 시 미지급
일비	정액	· 2만원 * 관용차, 렌터카 이용 시 1/2 삭감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 기준으로 지급			
업무 활동비 (240)	사업 추진비 (01)	회의 식비	○ 교육프로그램 운영 회의식비 (오리엔테이션, 현장학습, 결과발표회 등 특별교육에 한함) - 다과비 기준단가 : 3,000원 / 1인 1회 기준 - 식비 기준단가 : 10,000원 / 1인 1식 기준			
			○ 회의, 역량강화 활동 등 기타 회의식비 - 다과비 기준단가 : 5,000원 / 1인 1회 기준 - 식비 기준단가 : 25,000원 / 1인 1식 기준 ※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110)	일용 임금 (03)	보조 인력	○ 단기용역비(일용직) - 최대 1일 8시간, 68,720원, 연간 30일 이내 활용 ※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적용			

**<붙임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구분	증빙서류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조손 가정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 증명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재원확인 증명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
소년·소녀 가장	가족관계증명서	
도서벽지 거주자	재학증명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학교장 추천자	학교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자치단체장 추천자	자치단체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구 분	증빙서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만20세~만35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 F-5, F-6 비자)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위기 청소년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증명서가 있는 자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갱생보호 대상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 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노숙인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